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황국주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2025. 4. 9.(수)
- 회부일자: 2025. 4. 9.(수)
- 검토기간: 2025. 4. 10.(목) - 2025. 4. 17.(목)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훈련·포상 등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임용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등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직무수행의 제한 및 근무실적평가 (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비밀엄수,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근무 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등 정책지원관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은 정책지원관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 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2022년 7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임용·운영하고 있는 달서구의회의를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¹⁾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2025년 4월 현재 6개 광역의회와 43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대구광역시에서는 남구·북구·수성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